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신청기간 연장 공고

우리 구는 주거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갈 공동체주택 「청년주택 (이와일가 1 ~ 2동, 우리가)」, 「신혼부부주택(청년미래공동체주택)」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합니다.

2023년 9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자립기반이 취약한 19~39세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 자발적으로 공동체(협동조합)를 구성하여 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공동체주택의 입주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입주자들은 주택 내 마련된 공유공간(커뮤니티실)을 활용하여 공동체 유지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모집기준일)은 최초 공고일인 **2023. 9. 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신청기간) (최초) 2023. 9. 8.(금) ~ 9. 14.(목) / (연장) 2023. 9. 15.(금) ~ 9. 21.(목) 17:00  
- 최초 신청기간[2023. 9. 8.(금) ~ 9. 14.(목) 17:00] 신청인 미달로 신청기간을 연장합니다.  
- **최초 신청기간 신청인[2023. 9. 8.(금) ~ 9. 14.(목) 17:00]이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연장신청기간 [2023. 9. 15.(금) ~ 9. 21.(목) 17:00]의 신청자보다 방호수 추첨기회를 순위별로 우선 부여합니다.**
- (입주자격)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2023년 통계청 발표) 70%이하 세대 중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접수방법) 인터넷 이메일 접수가 가능합니다.
- (신청접수) 신청은 주택단지 **단위(동단위)로 신청**하며, 호는 당첨자 직접 추첨으로 배정합니다(교환불가).
- (1세대 1주택) 주택은 1세대 1주택만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예비자 선정) 공급호수의 200% 내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계약취소, 미입주 등으로 공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을 진행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 공급개요

### ■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기준일(최초공고일) 2023. 9. 1.(금)

주택공개	신청접수	접수서류 전산입력	소득재산 조회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당첨자 발표	입주자 교육	계약	입주
'23.9.8.(금) '23.9.11.(월) <b>'23.9.19.(화)</b>	(최초) '23.9.8.(금) ~ '23.9.14.(목)  (연장) <b>'23.9.15.(금)</b> ~ <b>'23.9.21.(목)</b>  이메일 접수	'23.9.15.(금) ~ '23.10.5.(목)	'23.10.6.(금) ~ '23.11.16.(목)	'23.11.17.(금) ~ '23.11.23.(목)	'23.11.28. (화)	'23.12.2. (토)	'23.12.18.(월) ~ '23.12.20.(수)	'24.1.3.(수) ~ '24.3.4.(월)
공개주택 현장 방문		접수서류 전산입력	소득재산 조회, 누락서류 요청	대상자 별도 안내	당첨자, 예비자 발표	당첨자 <b>필수참석</b> 교육 호수추첨	SH공사 1층 매입주택 공급부	입주

### ■ 접수일정

접수방법	접수기간	유의사항
담당자 이메일 신청접수 toyonkim@sdm.go.kr	(최초) 2023.9.8.(금)~2023.9.14.(목) 17:00 (연장) <b>2023.9.15.(금)~2023.9.21.(목) 17:00</b>	접수 마지막날 <b>9. 21.(목) 17:00 접수마감</b>

### ■ 공급대상: 총 17세대

#### ○ 신혼부부주택: 모집 1세대

주택명	주소	규모	모집 (공가)	호수	전용면적 (㎡)	소득구분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청년미래 공동체	연희로41 가길 33 (흥은2동)	총80호 중 신혼부부주택 총 24호	1	103동 501호	45.31	50%이하	24,910,000	324,600
						50초과~70%이하	41,530,000	541,100

- . 유형: 매입투룸(SH)
- . 준공: 2019. 4월
- . 이 주택의 규모는 지상 5층(1층 필로티, 2~5층 거주)이며, 신혼부부주택 3개동(각 동 8세대, 총 24세대) 외 독립.민주 유공자(3개동 24호), 청년(4개동 32호)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주택입니다.
- . 1호당 주방(거실), 욕실은 1개씩 있음. 빌트인 가전제품 미설치
- . 일부 주택은 실외기실이 별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발코니 등 내부 설치해야 함(외부설치 불가로 건축승인)
- . 동별 승강기 있음. 승강기 유지보수비, 정기검사비, 관리비 등 추가 발생 비용은 입주자 부담
- . 101동 ~ 106동까지 6개동은 지하주차장 전체가 띄어 있는 구조 총 주차대수 71대. 입주자는 동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사용가능
- . 옥상에 태양광 집열판(공용전기활용) 및 화단 설치. 동별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 . 106동 1층에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 . 커뮤니티실 등 주민공동시설이 있으며, 커뮤니티실은 109동 1층에 위치
- . 101동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입주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교육연구시설(작은도서관 및 열람실) 위치(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 운영)

○ 청년주택: 모집 16세대

※ (참고) 최초 신청기간 경쟁률 높은 순: 우리가->이와일가1동->이와일가 2동

주택명	주소	규모	모집 (공가)	호수	전용면적 (㎡)	소득구분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이와 일가 1동	증가로 216-7 (북가좌2동, 제이하우스 2차)	2층 4호 3층 4호 4층 2호 커뮤니티실 5층 2호 (총 12호)	5	201	29.86	50%이하	9,840,000	128,300
						50초과~70%이하	16,420,000	213,800
				202	29.54	50%이하	9,950,000	129,600
						50초과~70%이하	16,590,000	216,100
				203	29.65	50%이하	9,990,000	130,200
						50초과~70%이하	16,650,000	216,900
				301	29.86	50%이하	9,840,000	128,300
						50초과~70%이하	16,420,000	213,800
				501	27.70	50%이하	8,780,000	114,400
						50초과~70%이하	14,630,000	190,600
이와 일가 2동	증가로28길 11 (북가좌2동, 진흥하우스)	2층 4세대, 커뮤니티실 3층 5세대 4층 5세대 5층 2세대 (총 16세대)	9	201	16.29	50%이하	5,750,000	74,900
						50초과~70%이하	9,590,000	124,900
				202	17.26	50%이하	6,100,000	79,400
						50초과~70%이하	10,160,000	132,400
				301	16.29	50%이하	5,750,000	74,900
						50초과~70%이하	9,590,000	124,900
				302	17.26	50%이하	6,100,000	79,400
						50초과~70%이하	10,160,000	132,400
				305	14.72	50%이하	5,250,000	68,300
						50초과~70%이하	8,740,000	113,900
				402	14.52	50%이하	5,010,000	65,400
						50초과~70%이하	8,360,000	109,000
				403	14.12	50%이하	4,880,000	63,600
						50초과~70%이하	8,130,000	106,000
				501	29.05	50%이하	9,290,000	121,100
						50초과~70%이하	15,490,000	201,900
502	29.10	50%이하	9,310,000	121,200				
		50초과~70%이하	15,510,000	202,200				
우리가 (우리家)	명지길 47 (홍은2동, 나래빌)	1층 주차장, 커뮤니티실 2~5층 각 4세대 (총 16세대)	2	202	26.05	50%이하	11,520,000	150,100
						50초과~70%이하	19,210,000	250,300
				204	26.19	50%이하	11,710,000	152,500
						50초과~70%이하	19,530,000	254,400

- . 유형: 매입원룸(SH)
- . 준공: 이와일가(1,2동) 2014년 / 우리가 2019년
- . 규모: 지상 5층(1층 필로티, 2~5층 거주)
- . 승강기: 미설치
- . 주차공간: 이와일가 1동 7대, 이와일가 2동 6대, 우리가 8대
- . 커뮤니티실: 이와일가1동 403호, 이와일가2동 203호 / 우리가: 주차장 옆 1층
- . 동체 주택의 계단, 복도, 현관, 공용공간,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공동체 규약에 입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임대조건

임대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계약: 2년</li> <li>. 입주 자격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계약 갱신</li> <li>. 청년주택 최장 거주기간: 6년</li> <li>. 신혼부부주택 최장 거주기간: 20년</li> </ul>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평균 소득기준 50%이하와 50%초과~70%이하 임대가격 차등 적용</li> <li>.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인상가능</li> </ul>

## ■ 임대료, 임대보증금 상호전환

- 전환횟수: 1년 1회 전환신청 가능
- 전환단위: 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상호전환 종류

구분	전환금액 제한	전환이율	계산방법	예시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료의 60%까지 전환가능	6.7%	낮출임대료 ÷ 6.7% × 12개월 = 올라가는 보증금	임대료 1만원당 약 180만원 추가 납부
임대료 ↑ 임대보증금 ↓	임대보증금의 60%까지 전환가능	2.5%	낮출 보증금 × 2.5% ÷ 12개월 = 올라가는 임대료	보증금 100만원당 월임대료 약 2,000원 추가 납부

## II 신청자격

### ■ 일반사항

-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최초 공고일(2023. 9. 1.)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 청년주택의 경우 최초 공고일(2023. 9. 1.) 기준 19 ~ 39세 이하 미혼(혼인 상태가 아님)이면서 대학졸업예정자(졸업예정증명서 제출가능자만 해당), 취업준비생, 근로(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주택은 최초 공고일(2023. 9. 1.) 기준 혼인(재혼)신고일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중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는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한 내 혼인신고 미완료시 선정 또는 계약 취소 사유가 됩니다.
- 신청자는 공동체주택 의무사항(공동체규약 제정, 공동체공간 운영, 공동체 교육 활동 적극 참여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본인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직계존비속에 신청자의 형제, 자매 및 동거인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및 자산·자동차가액 기준을 동시 충족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2,347,719	3,003,226	3,359,099	3,811,028	4,020,246	4,350,820
자산	.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5천5백만원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자산 기준 미적용)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2023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0%)	2인 가구 (+10%)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3,018,496	4,004,301	4,702,739	5,335,439	5,628,344	6,091,147

- ※ 위 월평균 소득기준은 2023년도 통계청 발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으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 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인가구는 기준금액의 20% 2인금액은 기준금액의 10%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이며,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 입주자격, 소득금액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최초 모집공고일(2023.9.1.)이며, 다만 서대문구가 입주 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하며, 태아수 확인 불가시 1인으로 산정합니다.

## ■ 입주자 선정 기준

- 선정기준: 서류심사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인원: 공급예정세대의 3배수 / 각 주택(동)당 최종 1, 예비 2의 비율
- 평가기준: 청년주택 배점 40점, 신혼부부주택 배점 100점

청년주택 (총 40점)		신혼부부주택 (총 100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10점	근무지 또는 거주지(서대문구)	15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 70% 이하	5점	※ 무직인 경우 현 거주지 적용		
지층, 고시원 옥탑방 등 주거취약주택 3개월 이상 거주	10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15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초과 ~ 70% 이하	10점	
근무지 또는 거주지(서대문구)	5점	독립.민주유공자의 직계비속	15점	
※ 무직인 경우 현 거주지 적용				
독립.민주유공자의 직계비속	5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10점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	5점	
		※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장애인이 2인 이상일 경우 등급이 높은 1인만 적용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자	5점	부부 중 연령이 높은 자 30세 미만	15점	
		30세 이상 35세 미만	10점	
		35세 이상	5점	
최초공고일 기준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5점	자녀의 수 3인 이상	15점	
	3년 미만 4점	2인	10점	
	1년 미만 3점	1인	5점	
	※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와 태아도 포함하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미성년 자녀도 포함. 예비신혼부부의 태아는 자녀의 수에서 제외			
	혼인기간 3년 이내		15점	
		3년 초과 5년 이내	10점	
		5년 초과 7년 이내	5점	

## ○ 동점자 처리 기준 순위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1. 근무지 또는 거주지가 서대문구인 자	1. 근무지 또는 거주지가 서대문구인 자
2. 소득(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이 적은 자	2. 소득(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이 적은 자
3. 생년월일이 앞선 자(연령이 높은 자)	3. 자녀의 수가 많은 자

### ※ 독립.민주유공자의 범위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11호, 12호, 13호 적용대상자
-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
- . 기타 민주화운동 공헌자·희생자

■ 주택전경 (※ 실제 주택은 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주택(청년미래공동체주택) 외부



신혼부부주택(청년미래공동체주택) 내부



이와일가1동(청년주택)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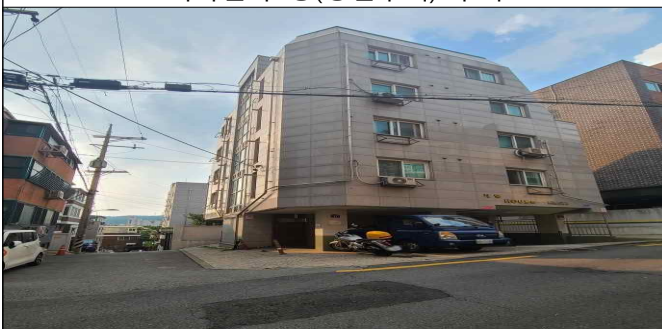
이와일가1동(청년주택) 방



이와일가1동(청년주택) 부엌



이와일가1동(청년주택) 화장실



이와일가2동(청년주택) 외부



이와일가2동(청년주택)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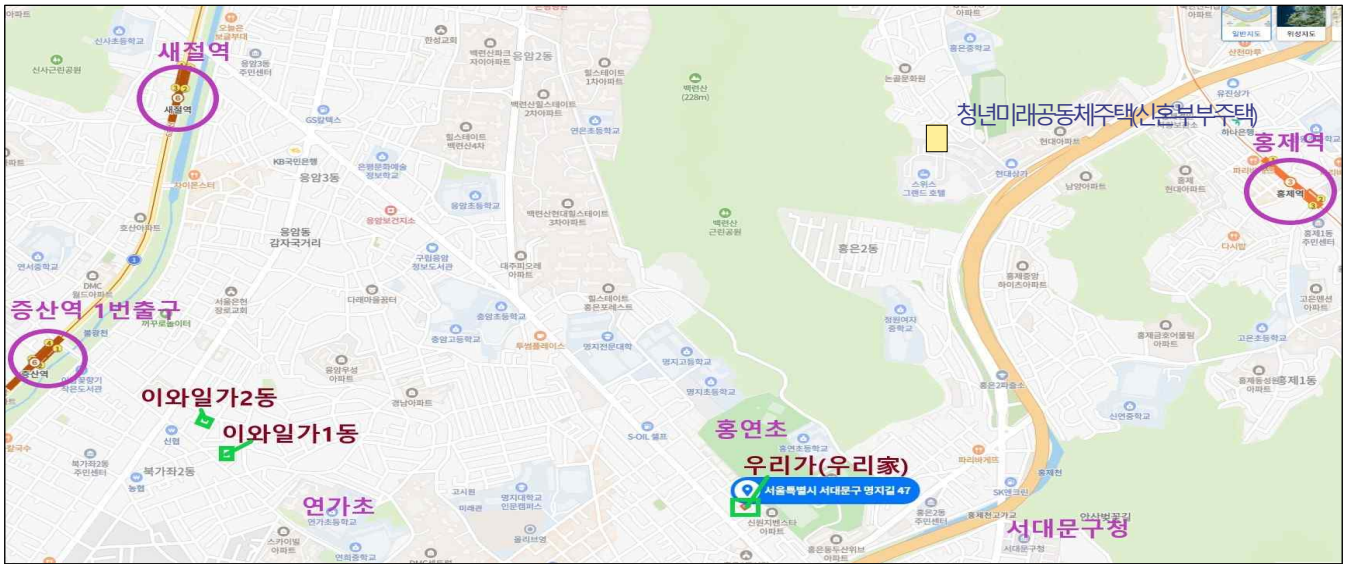


우리가 외부



우리가 내부

## ■ 주택 위치도



## III 공급일정

### ■ 공급일정

○ 공급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문자(SMS) 통지됩니다.

구분	일정	내용																			
모집공고	'23.9.1.(금)	. 최초 모집공고일은 2023.9.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주택공개	'23.9.8.(금) '23.9.11.(월) '23.9.19.(화)	. 공개장소: 해당주택 현장 . 공개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주택공개 기간 외에는 주택 내부를 공개하지 않으며, 주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각 주택별 한 호만 공개하며, 동일 주택 호실, 층수에 따라 내부는 상이합니다. . 공개주택																			
		<table border="1"> <thead> <tr> <th>주택명</th> <th>구분</th> <th>주소</th> <th>공개호수</th> </tr> </thead> <tbody> <tr> <td>청년미래공동체주택</td> <td>신혼</td> <td>연희로41가길 33 (홍은2동)</td> <td>103동 501호</td> </tr> <tr> <td>이와일가 1동</td> <td>청년</td> <td>증가로 216-7 (북가좌2동)</td> <td>201호</td> </tr> <tr> <td>이와일가 2동</td> <td>청년</td> <td>증가로28길 11 (북가좌2동)</td> <td>201호</td> </tr> <tr> <td>우리가</td> <td>청년</td> <td>명지길 47 (홍은2동)</td> <td>204호</td> </tr> </tbody> </table>	주택명	구분	주소	공개호수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신혼	연희로41가길 33 (홍은2동)	103동 501호	이와일가 1동	청년	증가로 216-7 (북가좌2동)	201호	이와일가 2동	청년	증가로28길 11 (북가좌2동)	201호	우리가	청년	명지길 47 (홍은2동)
주택명	구분	주소	공개호수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신혼	연희로41가길 33 (홍은2동)	103동 501호																		
이와일가 1동	청년	증가로 216-7 (북가좌2동)	201호																		
이와일가 2동	청년	증가로28길 11 (북가좌2동)	201호																		
우리가	청년	명지길 47 (홍은2동)	204호																		
신청접수	'23.9.8.(금) ~ '23.9.21.(목) <b>17:00까지 매일 도착분에 대해 접수</b>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구정소식-고시공고)에서 입주신청서 확인이 가능하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담당자 이메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b>'23.9.21.(목) 17:00 정각까지 담당자 메일로 도착했을 경우에만 접수하며, 기한 내 도착하지 않은 서류는 무효처리됩니다.</b> 신청인 메일발송 후 담당자 이메일 도착까지 수신품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 이메일 전송 오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구분	일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청서와 구비서류는 jpg파일로 모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b>(불가피하여 서류를 pdf파일로 스캔 제출하실 경우 절대 한 장씩 스캔하지 마시고 pdf 파일 한 개로 한꺼번에 스캔하여 제출 바랍니다.)</b></li> <li>신청접수 이메일주소 toyonkim@sdm.go.kr</li> <li>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습니다.</li> </ul>
접수서류 전산입력	'23.9.15.(금) ~ '23.10.5.(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신청인에 개별 연락드립니다.</li> </ul>
소득재산 조회	'23.10.6.(금) ~ '23.11.1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소득 및 재산 조회 기간 내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li> <li>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주민등록표 구성에도 불구하고, 예비신혼부부 당사자(2명)을 포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 소득 및 자산을 검증합니다.</li> </ul>
자격검증 및 소명안내	'23.11.17.(금) ~ '23.11.2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소유여부 등 확인을 통해 소명 대상자에 개별 연락드립니다.</li> <li>기한 내 소명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자 및 예비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li> </ul>
당첨자 발표	'23.11.28.(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는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SMS) 안내드립니다.</li> </ul>
입주자 교육	'23.12.2.(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는 입주자 교육에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b>미참석시 당첨취소됩니다.</b></li> <li>당첨자는 추첨으로 선정된 동.호의 주택을 배정합니다(당첨자 직접 추첨).</li> <li>호실 변경은 불가하며, 당첨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합니다.</li> </ul>
계약	'23.12.18.(월) ~ '23.12.20.(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약장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li> <li>계약시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li> <li>계약금: 선정주택 임대보증금의 10%</li> <li>무주택세대 구성원, 서울시 계속 거주 등 자격사항이 최초 공고일(2023.9.1.) 이후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기타 사유로 입주대상자 발표 후 부적격(착오에 의한 선정포함)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기간내 방문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서류결격, 미제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제출서류가 신청사실과 다르거나 위조 등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및 계약거절(무효)가 됩니다.</li> </ul>
입주	'24.1.3.(수) ~ '24.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이사일은 은평서대문중로센터에 문의하시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최초 모집공고일(2023.9.1.)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구분		구비서류	서식	비고
	필수	입주신청서	별첨서식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첨서식	
	필수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첨서식	. 2번 동의자란 본인 포함 작성. 본인 누락 경우 전산접수 불가
	필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별첨서식	. 신청인 포함 세대구성원 전체 집 상가 사업장 등 임대, 임차 계약서 사본 필수 제출
	필수	공동체주택 입주자 유의사항 준수 및 이행 동의서	별첨서식	
	필수	신청인 가족관계상세증명서	신청인 준비	.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쌍방 모두 제출
필수	① 대학생	졸업예정증명서	신청인 준비	.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대학생만 신청가능
	② 취업준비생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전산확인
	③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제출)	신청인 준비	. 근무지 주소 포함된 서류 제출
	④ 사업소득자	-	-	. 입주신청서에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시 전산확인
해당자	민주화운동 공헌자	입주추천서	신청인 준비	. 국가보훈처 유공자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민주화운동 공헌자의 경우 별첨서식 입주추천서 제출
해당자	(예비)신혼부부	임신관련서류	신청인 준비	. 세대원수에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태아는 세대구성원수(소득 기준)에는 포함되며, 자녀의 수 배점에는 포함되지 않음
필수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준비	. 예비신혼부부는 당첨, 계약체결 후 해당 주택 키(번호) 수령일 전일까지 제출
필수	(예비)신혼부부	신청위임장	별첨서식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모두 신청인의 배우자 작성
필수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별첨서식	. 예비신혼부부만 제출
해당자	신혼부부	입양관계증명서	별첨서식	

# IV

## 추가 안내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 5. 19., 2016. 8. 12., 2017. 11. 24., 2018. 12. 11., 2023. 5. 10.>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 소득, 자산 산정방법

○ 소득,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li> <li>·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li> <li>·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li> <li>·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li> </ul>
총 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공시가격</li> </ul> </li> <li>·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li>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 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5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li> </ul> </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ul> </li> <li>·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li> <li>※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li> </ul>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li> <li>·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li> <li>·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li> <li>·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li> <li>·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li>·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li> </ul>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li> <li>·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li>·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li> </ul>

구분	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득세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li> <li>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li> <li>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li> <li>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li> </ul>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li> <li>공공기관 대출금</li> <li>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li> <li>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li> <li>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li> </ul>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li> <li>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li> <li>-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li> <li>-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li> <li>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li> </ul>

##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b>정보 제공 동의</b>	<b>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b>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 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 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 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 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지방세정 자료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li> <li>-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li> <li>-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li> </ul>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li> <li>-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li> </ul>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 V

## 유의사항

-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주차장 등 포함 면적입니다.
- 주택은 주택가에 위치하므로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간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실별 전용면적 또는 층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외에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 관리비용 등) 및 관리비 예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계약 관리 및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담당합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자가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공동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재산 등 확인 결과 대상자로 적합하더라도 공실이 없을 경우, 예비입주자의 선정순서에 따라 공실 발생시 입주 안내하며, 예비입주자 자격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기한만료에 대해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호실 배정 후 호실 변경은 불가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9.1.)로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분양권 등 포함)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소득산정, 중복신청 등의 확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1세대(해당세대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입주대상자 중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거주 기간 중 무단이탈 또는 장기 체납, 불법, 전매 등의 사유로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계약해제 및 해지된 경우에는 재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의 현황 및 입지환경 등 제반사항은 반드시 현장을 확인하신 후 신청 및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공급현황, 공급일정 등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진행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소득자료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 자료만을 적용하며, 조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에게 직접 소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소득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신청자 중 소득기준 초과,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초과, 주택소유 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개별 안내된 소명기한까지 부적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명하여야 하며, 기한 내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소명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적격자로 확정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거주 중인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도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당첨자 발표 전·후에 주택소유, 부양가족 수, 총자산 및 차량 가액, 소득입증 심사서류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않거나 입주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입증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탈락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우 및 서류의 결격, 착오에 의한 당첨,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계약)자가 된 경우에도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의 주소, 이메일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 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 여부를 필히 확인하고, 당첨

후 입주 전까지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당첨(예정)취소 및 계약 거절의 경우, 계약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금 반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자가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대출 목적물을 해당 임대주택으로 변경 후 입주 가능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기대출한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주택을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분증, 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청년주택 입주대상자는 단독세대로 입주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 퇴거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남녀혼숙 등 사회적 문란행위, 향정신성 의약품 음용, 상습 음주 및 흡연, 고성방가 및 소음 발생 행위, 냄새 및 악취 발생원인 제공 행위, 도박, 친구나 친척 등의 잦은 방문으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 타 입주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는 행위 등)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지속할 시 퇴거 조치 및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상위 공동생활 위해행위 등으로 주택 내 지속·반복된 민원발생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민을 대표하는 기구에서 입주민 퇴거 사항에 대한 의결이 있을 시 구청은 해당 입주민에게 공동체주택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주택 입주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 재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의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할증 또는 퇴거되며, 그 외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거나 숙박공유 사이트에 등록하여 단기 임대하는 등 양도, 전대하는 행위는 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4년의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하수위관련 구조물 부력방지를 위해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지하수가 유출될 경우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이용 조례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등 유지관리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하수도법 제2조, 65조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3조, 34조)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의하며, 공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VI 문의전화

- 신청관련: 서대문구청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02-330-8636)
- 계약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44)
- 입주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은평서대문중로센터(☎02-6910-9400~1)

- 별첨 1. 입주신청서식 각 1부(별첨서식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서식이며, 그 외 제출서류는 신청인이 별도 준비하여 제출)
2. 주택 평면도 1부. 끝.